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84호(號) 1927(昭和 2)년 12월 9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27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73호(號) 철도성선(鐵道省線)과 조선(朝鮮) 및 만주(滿洲)간(間) 발착하물통관취급규칙(發著荷物通關取扱規則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12월 9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제6조(條)제5항(項) 및 제9조(條) 중(中) 「공탁수령서(供託受領書)」를 「공탁수령증(供託受領證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6조(條)제9항(項) 중(中) 「1920(大正 9)년 조선총독부제령(朝鮮總督府制令)제19호(號)제1조(條)제2항(項)」을 「1920(大正 9)년 제령(制令)제19호(號)제4조(條)」로, 「동(同) 제령(制令)시행규칙(施行規則)제1조(條)」를 「동(同) 제령(制令)시행규칙(施行規則)제2조(條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14조(條)제1항(項) 중(中) 「주류(酒類), 당밀(糖蜜)을」을 「주류(酒類)를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18조(條) 중(中) 「조선총독부(朝鮮總督府) 철도국선(鐵道局線)을 경유(經由)하고」의 다음에 「일본 내지(日本內地)와 조선(朝鮮) 내(內) 사설철도선(私設鐵道線) 및」을 추가(追加)함.